

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(거주자)

※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1. 신청인

① 성명		② 주민등록번호	
③ 주소			

2. 과세기간

④ 해당 과세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⑤ 직전전 과세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
		⑥ 직전 과세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

3. 환급신청 명세

구 분		사업장(1)	사업장(2)	합 계
사업장 정보	⑦ 상 호			
	⑧ 사업자등록번호			
	⑨ 사업장 소재지			
해당 과세기간	⑩ 사업장별 결손금			
	⑪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	⑫ 직전전 과세기간		
		⑬ 직전 과세기간		
직전전 과세기간	⑭ 사업장별 소득금액			
	⑮ 종합소득금액			
	⑯ 종합소득 과세표준			
	⑰ 종합소득 산출세액			
	⑱ 종합소득 결정세액			
	⑲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: ⑰ × (⑭ ÷ ⑮)			
	⑳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: ⑱ × (⑭ ÷ ⑮)			
환급세액 계산	㉑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: (⑰ - ⑫ 합계) × 직전전 과세기간 세율 × [(⑭ - ⑬) ÷ (⑮ - ⑬)]			
	㉒ 소급공제 가능액 : ⑲ - ㉑			
	㉓ 소급공제 한도액 : ㉒			
	㉔ 환급신청세액 : MIN[㉒, ㉓]			
직전 과세기간	㉕ 사업장별 소득금액			
	㉖ 종합소득금액			
	㉗ 종합소득 과세표준			
	㉘ 종합소득 산출세액			
	㉙ 종합소득 결정세액			
	㉚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: ㉘ × (㉕ ÷ ㉖)			
	㉛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: ㉙ × (㉕ ÷ ㉖)			

환급세액 계산	㉓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: (㉓-㉑합계) × 직전 과세기간 세율 × [(㉓-㉑) ÷ (㉓- ㉑)]			
	㉔ 소급공제 가능액 : ㉓-㉑			
	㉕ 소급공제 한도액 : ㉑			
	㉖ 환급신청세액 : MIN[㉔, ㉕]			

4.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

㉗ 금융기관/채신관서명		㉘ 계좌번호	
--------------	--	--------	--

신청인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 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세무대리인 (인)
(서명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※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전과세기간과 직전과세기간에 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.

1. ㉑ 사업장별 결손금: 「소득세법」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(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제외)을 적습니다.
2. ㉒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: 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, 직전전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구분하여 기입하며,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3. ㉓ 사업장별 소득금액, ㉔ 종합소득금액, ㉕ 종합소득 과세표준, ㉖ 종합소득 산출세액, ㉗ 종합소득 결정세액란: 직전전 과세기간의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4. ㉘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: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.

$$\text{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} \times \left(\frac{\text{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}}{\text{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}} \right)$$

5. ㉙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란: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안분합니다.

$$\text{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} \times \left(\frac{\text{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}}{\text{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}} \right)$$

6. ㉚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: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.

$$\left(\frac{\text{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} - \text{소급공제 받을 결손금}}{\text{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}} \right) \times \text{직전전 과세기간 세율} \times \left[\frac{\left(\frac{\text{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}}{\text{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}} - \frac{\text{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}}{\text{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종합소득금액}} \right)}{\text{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}} \right]$$

7. ㉛ 환급신청세액: ㉘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㉙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㉚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.
8. 직전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이미 소급공제받은 경우 직전전과세기간 소득세액계산은 직전전과세기간의 당초 과세표준에서 직전과세기간 결손금 중 소급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직전전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.